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시행계획

2026. 10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

목 차

Ⅰ.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시행계획 ····· 1

1. 약제급여 적정성평가

2.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

Ⅱ. 향후 계획 ····· 7

[붙임1]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

[붙임2]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[붙임3] 가산(우수·개선) 점수 산출 방법

Ⅰ.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

1. 약제급여 적정성평가

가. 배경 및 목적

○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,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(feedback)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·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추진 경과

○ ('01.)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실시
- 항생제, 주사제, 투약일당 약품비, 약품목수('02.)

○ ('06.) 국민 대상 기관별 항생제·주사제처방률 공개, 약품목수 지표 추가*
* 6품목이상처방비율, 소화기관용약 처방률

○ ('11.) 약제평가-지표연동자율개선제* 연계, 요양기관별 평가 등급 공개
* 의료질 영역(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, 주사제처방률, 6품목이상처방비율) 등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요양기관별 맞춤정보 제공 및 관리하는 제도

○ ('13.) 의원 외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도입
-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, 주사제처방률, 6품목이상처방비율

○ ('14.)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지표 개선 및 연령별 분석 정보 제공
- 광범위 항생제(세파3세대이상, 퀴놀론계 등) 처방률 지표 추가

○ ('15.) 약제평가-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* 산정 평가 연계
- (종별)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
- (지표)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, 주사제처방률
* 의료 질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

○ ('17.)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가감지급 모형개선
- (가감기준) 상대평가→절대평가(목표치 제시), 가감률 확대(1%→최대 5%)

〈참고〉「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(2016~2020)」 수립('16년 8월)

○ (관계부처) 복지부, 식약처, 질병청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환경부
○ (중점과제) 항생제 적정사용, 내성균 확산 방지,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등
○ (심평원 역할)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 등
○ (목표치)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22.1%,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 42.2%

○ ('19.) 급성하기도감염(J20-J22) 항생제처방률 모니터링 지표 신설, 평가지표 전환('20.)

○ ('22.) 항생제 사용량·처방일수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 환자 안전 모니터링 지표 신설 및 평가등급 기준 개선
- (기준 개선) 상대평가 → 절대평가(목표치 제시)

〈참고〉「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(2021~2025)」 수립 ('21년 11월)

○ (목표치) 항생제 사용량(DDD/1,000명/일) 20.9('25년까지)

○ ('23.) 핵심지표 중심 지표 정비 및 급성 상·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종합등급 신설('24. 적용)
-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 모니터링 전환,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등 종료

○ ('24.) 가감지급사업 기준 변경('26. 적용)
- (기준 개선) 슬라이딩 스케일 또는 상대평가 → 목표치 달성기관
- (주기 변경) 반기 단위 → 연 단위
- (대상 확대) 급성상기도감염 → 급성상·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

〈참고〉「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(2026~2030)」 수립('25년 12월)

○ (목표치) 항생제 사용량(DDD/1,000명/일) 28.6('30년까지)

○ ('26.) 유소아급성중이염 항생제 사용량(환자당 사용량·처방일수) 모니터링 지표 신설('27. 적용))

다. 평가 대상

○ **(대상 기간)** 2027년 1월~12월 심사결정분

○ **(대상 기관)**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(전산매체 미청구기관, 폐업기관 등 제외)

○ **(대상 자료)** 외래 처방·투여된 원내·외 청구 자료

라. 평가 항목 및 지표

〈주요 변경내용〉

○ **환자당 항생제 사용량·처방일수' 모니터링지표 내 '유소아 급성 중이염' 추가**

지표	현행	개선(안)
▪ **환자당 항생제 사용량(DDD)** ▪ **환자당 항생제 처방일수(DOT)**	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호흡기계질환	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호흡기계질환 **유소아 급성 중이염**

○ 3개 항목, 10개 지표(평가지표 5개, 모니터링지표 5개)

구 분[1)]	항 목	지표명
평가지표	항생제	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②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
	주사제	③ 주사제처방률
	약품목수	④ 처방건당 약품목수(전체상병) ⑤ 6품목이상 처방비율
모니터링 지표	항생제	⑥ 질환별 항생제처방률(전체상병, 호흡기계 질환, 유소아 급성 중이염)
		⑦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
		⑧ 항생제 사용량(환자당 항생제 사용량, 항생제 처방일수) * 급성 상·하기도감염, 호흡기계질환, **유소아 급성 중이염**
	약품목수	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⑩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

주1) 평가 지표는 공개 대상이며, 모니터링 지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의 연령별, 다빈도 상병별, 주요 진료과목별 평가결과를 평가군 평균과 비교하여 제공함

주2) 항목별 세부내용은 「붙임1.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」 및 「붙임2.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」 참고

마. 공개 방법

○ **(항생제 처방률)** 급성 상·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개별등급 및 종합등급

공개항목	대상상병	공개등급 기준	
항생제 처방률	급성 상기도감염	1등급	처방률 20%이하
		2등급	처방률 20%초과~30%이하
		3등급	처방률 30%초과~45%이하
		4등급	처방률 45%초과~60%이하
		5등급	처방률 60%초과~
	급성 하기도감염	1등급	처방률 30%이하
		2등급	처방률 30%초과~45%이하
		3등급	처방률 45%초과~60%이하
		4등급	처방률 60%초과~75%이하
		5등급	처방률 75%초과~
	급성 상·하기도감염[주)]	1등급	종합점수 90점초과~100점이하
		2등급	종합점수 80점초과~ 90점이하
		3등급	종합점수 70점초과~ 80점이하
		4등급	종합점수 60점초과~ 70점이하
		5등급	종합점수 60점 이하

주) 급성 상·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종합점수 및 등급
- (산출방법) 지표별 등급을 점수화하고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·등급 산출
 * 등급별 점수: 1등급 100점, 2등급 90점, 3등급 80점, 4등급 70점, 5등급 60점
- (산 출 식) 종합점수 = (급성 상기도감염 등급별 점수×50%) + (급성 하기도감염 등급별 점수×50%)
 * 단, 급성 상 · 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중 1개 지표의 등급만 산출된 경우에는 해당 지표 등급을 종합등급으로 적용

○ (주사제처방률 및 약품목수) 처방률 또는 상대지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

공개항목	대상상병	공개등급 기준	
주사제처방률	전체상병	1등급	처방률 2%이하
		2등급	처방률 2%초과~6%이하
		3등급	처방률 6%초과~13%이하
		4등급	처방률 13%초과~24%이하
		5등급	처방률 24%초과~
처방건당 약품목수	전체상병	1등급	상대지수 0.9이하
		2등급	상대지수 0.9초과~1.0이하
		3등급	상대지수 1.0초과~1.1이하
		4등급	상대지수 1.1초과~1.2이하
		5등급	상대지수 1.2 초과~

주)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해당병원 결과값(상대지수) 공개

바. 평가 결과 활용

○ **(대국민)**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 정보 제공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

○ **(요양기관)** 약제의 적정 사용 도모를 위한평가 결과 안내

○ **(정부 및 유관기관)** 정부 정책 및 타 평가 연계 활용을 위한 평가 결과 제공

- 의료질평가지원금, 전문병원 지정 평가
-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
- 보훈위탁병원 평가 및 KOSIS 업로드

○ **(우리원)** 그린처방의원 선정 등 연계 활용

2.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

가. 가감지급 대상

○ **(대상 기간)** 2027년 1월~12월 심사결정분(27차)

○ **(대상 기관)** 전체 의과 의원

○ **(대상 자료)** 외래 원외 처방전 및 원내 처방 청구자료

○ **(대상 항목)** 급성상·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, 주사제처방률, 6품목이상처방비율

나. 가감지급 기준

○ **대상항목 및 기준**

항목 \ 가·감산		가산		감산
		우수	개선	
항생제 처방률	급성 상기도감염	해당년도 처방률 20%이하 + 외래 PCI[2] 1.0 이하	전년대비 처방률 향상[1] +외래 PCI 1.0이하	해당년도 처방률 70% 이상 + 외래 PCI 1.0이상
	급성 하기도감염	해당년도 처방률 30% 이하 + 외래 PCI 1.0이하	전년대비 처방률 향상[1] + 외래 PCI 1.0 이하	해당년도 처방률 80% 이상 + 외래 PCI 1.0 이상
주사제처방률		해당년도 처방률 2% 이하 + 외래 PCI 0.6 이하	전년 대비 1등급 이상 향상 + 해당년도 3등급 이내 + 외래 PCI 2.0 미만	처방률 40% 이상 + 외래 PCI 1.5 이상
6품목이상처방비율 상대지수		해당년도 1등급 + 전체 상위 25%ile 이내	전년 대비 2등급 이상 향상 + 전체상위 50%ile 이내 + 외래 PCI 2.0 미만	9등급 + 처방비율 40% 이상 + 외래 PCI 1.5 이상

주1) 개선점수 산출식에 따라 1~5% 가산율이 결정되며, 산출방법은「붙임 3.」참고

주2) 외래 PCI:「그린처방의원 지정」사업의 PCI 적용 기준 활용(매 반기별 2개 연속 PCI 산출값)

○ **금액 산출방법**

- 항생제처방률
 · 가산(우수), 감산 금액 =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X 5%
 · 가산(개선) 금액 =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X 1~3%
- 주사제처방률 · 6품목이상 처방비율
 · 가산(우수), 감산 금액 =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X 1%
 · 가산(개선) 금액 =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X 0.5%

Ⅱ. 향후 계획

○ **'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추진**

- 세부시행계획 공지('26년 10월)
- 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('28년 하반기)
- 가감지급사업 결과 안내 및 지급('28년 하반기)

○ **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분석**

- 요양기관 대상의 주기적인 약제평가 모니터링 정보 제공(월, 분기, 반기)

○ **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지속**

- 평가 결과 하위 기관 대상의 질 향상 지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 서면 안내
- 신규 개설 기관 대상의 'e-평가시스템 활용 안내서' 제작 및 배포
- 항생제 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

[붙임 1]

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

평가지표1,2	항생제처방률 (급성상기도감염, 급성하기도감염)

정 의	○ 급성상·하기도감염 상병이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외래 원내 투여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 항생제 처방 빈도율 * 급성상기도감염(J00~J06), 급성하기도감염(J20~J22)
산 출 식	$\frac{\text{항생제 총 처방건수}}{\text{총 내원일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급성상·하기도감염은 주로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세균감염에 사용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하여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항생제 ○ 항생제의 범위 - 약효분류번호 611, 612, 613(항결핵제 제외), 614, 615, 618, 619, 621(sulfasalazine 제외), 625, 629 (Quinolone계열만 해당), 641(metronidazole만 해당) - 외용제(안과점안액 등), 장내감염용 항생제 제외 * WHO ATC 분류 J01(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)에 해당하는 성분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평가지표3	주사제처방률

정 의	○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제 처방 빈도율
산 출 식	$\frac{\text{주사제 총 처방건수}}{\text{총 내원일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○ 경구약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크고 처방률이 높아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제
제외기준	○ 검사 및 처치 목적 등으로 투여된 주사제 및 외래에서 경구제 사용을 대체하기 곤란한 일부 주사제(에리스로포이에틴, 항혈우인자, 인슐린, 항암제, 성장호르몬제 등) 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평가지표4	처방건당 약품목수

정 의	○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외래 원외처방 1회당 평균적으로 발생된 약품목
산 출 식	$\frac{\text{원외처방 총약품목수}}{\text{총 원외처방건수}}$
선정근거	○ 약물 이상반응과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키고, 약물복용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,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외처방 전체 약제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평가지표5	6품목이상 처방비율

정 의	○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원외처방 6품목이상 처방건의 비율
산 출 식	$\frac{\text{6품목 이상 처방건수}}{\text{총 원외처방건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○ 상병별 평균 약품목수 및 제외국의 현황 등을 참조하여 상대적 과다처방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외처방 전체 약제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모니터링지표1	질환별 항생제 처방률 (전체상병, 호흡기계질환, 유소아 급성 중이염)

정 의	○ 전체상병, 호흡기계질환(주상병 J00-J47) -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외래 원내투여 주사 및 원외 처방된 항생제 처방 빈도율 ○ 유소아 급성 중이염(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H650, H651, H660) - 청구된 유소아(만15세미만)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외래 원내 투여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 항생제 처방 빈도율
산 출 식	$\frac{\text{항생제 총 처방건수}}{\text{총 내원일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○ 전체상병, 호흡기계질환 - 외래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은 호흡기계 질환 상병에 대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하여 선정 ○ 유소아 급성 중이염 -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이 마련되어 약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,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고자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항생제 ○ 항생제의 범위 - 약효분류번호 611, 612, 613(항결핵제 제외), 614, 615, 618, 619, 621(sulfasalazine 제외), 625, 629 (Quinolone계열만 해당), 641(metronidazole만 해당) - 외용제(안과점안액 등), 장내감염용 항생제 제외 * WHO ATC 분류 J01(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)에 해당하는 성분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모니터링지표2	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

정 의	○ 급성상기도감염 상병(J00~J06)이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외래 원내투여 주사 및 원외 처방된 광범위 항생제 처방 빈도율 ○ 광범위 항생제: 세파3세대이상,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
산 출 식	$\frac{\text{광범위 항생제 총 처방건수}}{\text{항생제 총 처방건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○ 급성상기도감염은 주로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내성률이 높은 광범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위하여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용 광범위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광범위 항생제 - WHO ATC 분류 J01(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)에 해당하는 성분 -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: 약효분류번호 612, 613, 618, 619 중 세파3세대이상 -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: 약효분류번호 614, 619 중 마크로라이드계열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모니터링지표3	항생제 사용량 [환자당 항생제 사용량(DDD), 항생제 처방일수(DOT)]
정 의	○ (항생제 사용량) 급성상·하기도감염, 호흡기계질환 환자 1,000명당 항생제 사용량 ○ (항생제 처방일수) 급성상·하기도감염, 호흡기계질환 환자 1,000명당 항생제 처방일수 * 급성상기도감염: J00~J06 / 급성하기도감염: J20~J22 / 호흡기계질환: J00~J47 / 유소아 급성 중이염: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H650, H651, H660
산 출 식	○ 항생제 사용량 = $\frac{\text{항생제 총 사용량(DDD)*}}{\text{총 환자수}} \times 1{,}000\text{명}$ * 항생제의 총 그람수를 WHO가 정한 DDD (일일상용량, Defined Daily Dose)로 변환한 값 ○ 항생제 처방일수 = $\frac{\text{항생제 총 처방일수}}{\text{총 환자수}} \times 1{,}000\text{명}$
선정근거	○ 우리나라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(2021)에서도 항생제 사용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함 ○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선정 ○ 항생제 사용량(DDD)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로 산출하여서 소아·신기능 저하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항생제 처방일수 지표를 추가 도입
세부기준	○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항생제 ○ 항생제의 범위 - 약효분류번호 611, 612, 613(항결핵제 제외), 614, 615, 618, 619, 621(sulfasalazine 제외), 625, 629 (Quinolone계열만 해당), 641(metronidazole만 해당) ○ 외용제(안과점안액 등), 장내감염용 항생제 제외 - 항생제 중 DDD 정보 미부여 제품 제외 * WHO ATC 분류 J01(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)에 해당하는 성분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모니터링지표4	소화기관용약 처방률

정 의	○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에 소화기관용약을 포함하고 있는 처방건의 비율
산 출 식	$\frac{\text{소화기관용약 처방건수}}{\text{총 원외처방건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○ 약품목수와 상관성이 높은 약제로, 처방경향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외처방 소화기관용 경구약제 ○ 소화기관용약 - 약효분류번호 232(소화성궤양용제), 234(제산제), 236(이담제), 237(정장제), 239(기타의 소화기관용약)
제외기준	○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질환(소화기계질환 (K20~K93), 소화기관 악성신생물(C15~C26), 관절병증(M00~M25), 배병증(M40~M54)) 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모니터링지표5	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

정 의	○ 청구된 요양(의료)급여비용 명세서 중 65세 이상 환자의 원외처방전에 노인주의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처방건의 비율
산 출 식	$\frac{\text{노인주의 의약품 처방건수}}{\text{65세이상 총 원외처방건수}} \times 100$
선정근거	○ 노인은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방문하여,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약물유해반응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됨 ○ 인구 고령화와 환자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의약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표 선정
세부기준	○ 외래 원외 처방된 노인주의 성분 의약품 ※ 노인주의 성분 범위: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중 항콜린계, 벤조디아제핀계, 항정신병제 성분
제외기준	○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(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 등)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 등

[붙임 2]

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1. 대상 상병

○ 주상병 기준(KOPG상병 분류 적용)으로 평가

- 보건소,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당 수가제 적용대상으로 KOPG 상병 분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88상병 분류기준을 대상으로 평가

○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주상병(J00-J06) 기준

○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주상병(J20-J22) 기준

○ 유소아 급성 중이염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기재된 급성 화농성 및 비화농성 중이염(H650, H651, H660) 기준

○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주상병(K20-K93, C15-C26, M00-M25, M40-M54) 제외

○ 주사제 처방률, 처방건당 약품목수,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전체상병 기준

※ 유소아 대상 연령

- 만15세 미만, 4개 연령구간으로 구분
- 6개월미만/ 6개월이상~만2세미만/ 만2세이상~만7세미만/ 만7세이상~만15세미만

2. 대상 약제

① 항생제

- 외래 원내에서 투여된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경구·주사용 항생제
- (항생제 범위) 약효분류번호 611, 612, 613(항결핵제 제외), 614, 615, 618, 619, 621(sulfasalazine 제외), 625, 629(Quinolone계열만 해당), 641(metronidazole만 해당)

② 광범위 항생제

- 외래 원내에서 투여된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항생제

·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 범위: 약효분류번호 612, 613, 618, 619 중 세파3세대이상

·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범위: 약효분류번호 614, 619 중 마크로라이드계열

③ 주사제

- 외래 원내에서 투여된 주사제
- 다만, 외래에서 주사제 투여가 불가피한 약제는 제외

· 제외 약효분류번호: 111, 112, 121, 142, 241, 249, 331, 333, 341, 349, 396, 421, 429, 431, 439, 490, 617, 631, 632, 633, 635, 636, 712, 713, 719, 721, 722, 728, 729

· 제외 주사제: 에리스로포이에틴, 항혈우인자, 성장호르몬제 등

※ 검사 및 처치 목적 등(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: 41, 45, 55, 99)으로 투여된 주사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'06년부터 외래에서 주사제 사용이 불가피한 일부 약제는 추가 제외함

④ 약품목수

- 외래 원외처방 전체 약제
- 성분 및 제형이 동일하고 함량만 다른 경우 1품목으로 산출
- 소화기관용약 범위: 약효분류번호 232, 234, 236, 237, 239
- 노인주의의약품 범위: 식품의약품안전처「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-노인주의 성분」기준 항콜린계, 벤조디아제핀계, 항정신병제 성분

3. 결과 산출

○ (상병별 및 지표별 결과값 산출) 항생제, 주사제, 처방건당 약품목수

○ (기관단위 상대지수 산출) 처방건당 약품목수(전체상병), 6품목이상 처방비율, 소화기관용약 처방률

※ 각 기관의 상병별 및 지표별 지표값을 산출 후 동일 평가군의 지표값 및 각 기관의 진료건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단위로 상대지수를 산출

$$\text{상대지수} = \frac{\sum_{i=KOPG\text{별}}^{n} (\text{해당기관의 } KOPG\text{별 지표값} \times \text{해당기관의 } KOPG\text{별 건수})}{\sum_{i=KOPG\text{별}}^{n} (\text{동일평가군 } KOPG\text{별 지표값} \times \text{해당기관의 } KOPG\text{별 건수})}$$

* 한 요양기관의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사용지표 대비 실제 발생된 사용지표 비율
* 동일 평가군은 요양기관 종별, 의원 세부진료과목별로 설정

4. 중증도 보정

○ 주상병 기준의 상대평가 방식 하에서 중증환자의 집중 등에 따른 특정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상병에 중증·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진료건을 대상에서 제외

○ 중증도 보정대상 상병

- 암질환·장기이식 등 중증질환, 희귀·난치성질환 등 특정기호 적용 대상 질환
- 사춘기의 장애(E30) 등과 같이 고비용의 성장호르몬제 투여가 필요한 질환 등

○ 중증도 보정방법

-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이 부상병인 경우 해당 건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(주상병은 포함)
- 다만, 치료실시 병원이 제한적인 혈우병(D66-D69, M36.2) 상병의 경우 주·부상병 모두 제외

[붙임 3]

가산(우수·개선) 점수 산출 방법

□ 가산 점수 산출 방법

○ 목표처방률에 따른 우수점수와 개선점수를 각각 산출

○ 우수점수와 개선점수 중 높은 점수를 가산율로 선택

지 표		구 분	
항생제 처방률	급성상기도 감염	기준	목표처방률: 20%, 감산기준치: 70%
		우수	우수점수: 5점
		개선	개선점수: 1~3점
	급성하기도 감염	기준	목표처방률: 30%, 감산기준치: 80%
		우수	우수점수: 5점
		개선	개선점수: 1~3점

구 분	구 간
우수점수 (5점)	= 5 (if 평가지표값 ≤ 목표처방률)
개선점수 (1~3점)	= 1~3 (if 전년도 평가지표값 > 평가지표값 > 목표처방률)
	$\text{개선점수} = \left(4 \times \left\lvert \frac{(\text{평가지표값} - \text{전년도 평가지표값})}{(\text{목표처방률} - \text{전년도 평가지표값})} \right\rvert\right) - 0.5$, 반올림

〈참고〉 가 · 감산지급 제외 대상

○ 가 · 감산 공통
- 명세서건수 100건 미만(항생제, 주사제), 전체원외처방건수 30건 미만(6품목)인 경우
- 가감산 금액 합계가 1만원 미만인 경우
-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(「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」 제13조1,3항)

○ 감산
-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(「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」 제13조2항)

○ 가산
-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·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외래사용량감소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
-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70%, 주사제 · 6품목이상 처방비율 40%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(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기준 적용)
-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하여 심결보험자부담액이 없는 경우